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설기계 대여대금 청구·지급 시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 규정 준용 》
■ 송기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61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송기현의원 대표발의(제2210861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청구·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 규정 준용(안 제32조제4항)	2

I. 송기현의원 대표발의(제2210861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기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6. 16.

다. 회 부 일 : 2025. 6.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대여대금 체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3. 검토의견

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청구·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 규정 준용(안 제3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③ (생략)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제8항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④ ----- ----- ----- ----- ----- ----- ----- -----제8항·제9항----- ----- -----제34조제9항·제35조제2항제5호----- -----. ----- ----- ----- -----제34조제9항의 경우에는 “수급인”은 “수급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에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²⁾ (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하고 있고,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출연 기관은 제외한다)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조달청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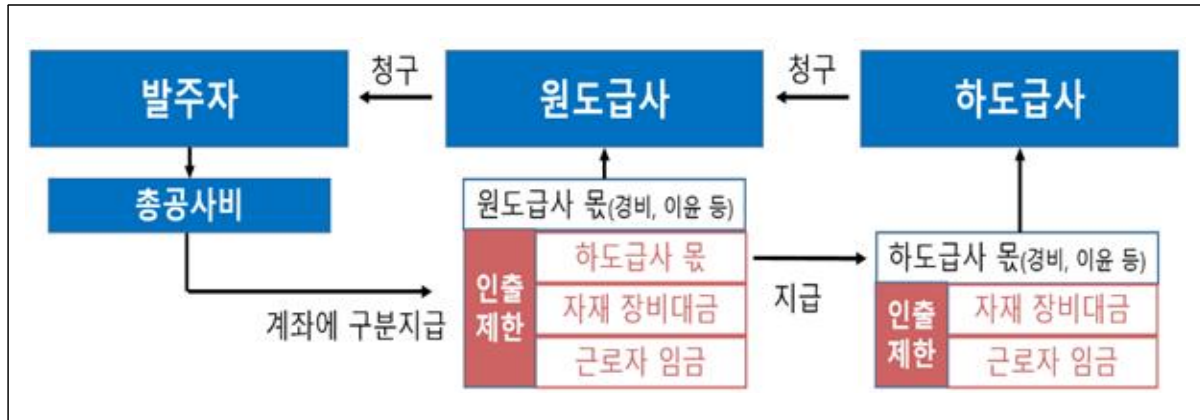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4.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외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인정한 기관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 흐름도】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현행법 제34조제9항 후단³⁾의 위임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현행법 시행규칙 제28조

3)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출연 기관은 제외한다)

제7항 및 제8항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시행규칙 제28조제7항제1호나목)하고, 청구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계좌를 지급대상자별로 등록(시행규칙 제28조제7항제1호다목)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⑦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구·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 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할 것
-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할 것
- 다. 나목에 따라 청구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계좌(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할 것.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등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할 것
- 나. 약정계좌(제1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이 자동으로 생성한 계좌)에 직접 입금(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직접 입금)할 것

⑧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8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로는 현재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 중임.

템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였는지, 지급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하였는지 적절성을 확인(시행규칙 제28조제7항제2호가목)하고, 지급대상자별로 등록된 약정계좌에 직접 입금(시행규칙 제28조제7항제2호나목)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같은 체계로 규정되어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 청구·지급 규정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에 대해서도 준용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34조제9항⁵⁾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공사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현재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5)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출연 기관은 제외한다)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체계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접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청구하면, 이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청구되는 체계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이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지급 시에 적용되는 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의무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금 청구에까지 확대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대금 청구·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금 미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제8항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등⁶⁾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6)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재·장비대금"이란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이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말한다.

포함된 자재·장비대금의 청구 및 지급 방법을 명시하고 있고, 전자조달 시스템등이 자재·장비대금 지급을 위해 구분된 별도의 계좌를 등록하고 건설사업자의 인출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재·장비대금을

제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의 기능) ① 전자조달시스템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능
 2.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계좌 및 일반계좌의 등록기능.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등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규칙 제28조제7항제1호에 따라 청구되어 규칙 제28조제7항제2호에 따라 약정계좌에 지급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및 임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수급인이 자기의 몫을 출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하수급인은 자재·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각각 이체만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기능
 4. 발주자가 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
 5. 발주자가 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
 6.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7. 선급금의 사용 내역을 수급인의 몫, 하수급인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8. 자재·장비업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능
- ② 전자조달시스템등이 제1항에 따른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구축·운영하는 자는 지체없이 기능을 갖추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전자조달시스템등이 제1항에 따른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구축·운영하는 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등을 개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사대금의 청구) ② 규칙 제28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역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몫, 하도급대금(제2호의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자재·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2.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몫, 자재·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 ③ 제2항에 따른 내역 중 자재·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에는 자재·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받을 자재·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의 성명(상호), 전화번호, 일반계좌 번호, 지급할 금액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4조에 따라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수급인의 몫 또는 하수급인의 몫에 포함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내역에 선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임을 지급대상자별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자가 이를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3항의 자재·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중 일반계좌 번호는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일반계좌 번호로 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 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 현황, 건설기계 등 자재·장비 제작·납품 및 운영현황 등 공사대금 청구가 적절한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건설기계협회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청구를 의무화하는 방식은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자이고 고령화되어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전자적 시스템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대여사업자들이 계약 단계에서 배제될 가능성 등 현실적 측면의 우려가 있으므로,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으로부터 자재·장비대금을 청구받은 자에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추가하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자재·장비대금 지급 의무화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방해·회피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을 공공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591